

안전기준 적합확인

신고서

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시		처리기간 25일 이내	
① 신고인	상호(명칭)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	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
② 수탁자	상호(명칭)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(전자우편:)		
	소재지(사업장)		(전화번호:) (팩스번호:)		
	제조방식	주문자 상표부착 제조(OEM) 주문자 개발 제조(ODM) 기타(제조방식 설명)			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10조제4항제10조제5항

및 같은 법 시행규칙

제5조제4항제5조제6항

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사항을

신고변경신고

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고의 경우: 다음 각 목의 서류 가.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사본(한국환경산업기술원 담당자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정보망을 통하여 그 결과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) 나. 제품의 사진 및 설명서 등의 제품정보에 관한 서류 다. 함유물질의 성분, 배합비율 및 용도에 관한 서류 라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8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표시건본 마. 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3항제6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·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(제3항제6호의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변경신고의 경우: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작성방법

1. ① 신고인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의 신청인과 동일해야 합니다.
2. ② 수탁자란은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는 경우로서 신고인이 위탁자인 경우에만 적되, 수탁자란에 작성해야 할 수탁자 정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.

처리절차

